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석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41 |
|----------|-----|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18일

발 의 자 : 안광석, 이상훈 의원(2명)

찬 성 자 : 김창원, 김동식, 김제리, 이영실,
최정순, 이현찬, 김화숙, 문영민,
김용석, 김춘례, 강대호, 최 선,
김인호, 노승재, 김정태, 신정호,
최영주, 고병국, 황규복, 김기대
의원(20명)

1. 제안이유

골목상권은 대부분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활성화 되어있고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 같은 골목에 위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용도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낙후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필요.

2. 주요골자

기존 대부분의 골목상권은 12m 이하의 이면도로에 활성화 되어있고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 낙후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도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가목, 사목, 너목, 더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③ (생 략) <u><신 설></u></p> |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3항제1호에도 구청장이 구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 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가목, 사목, 너목, 더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u></p> |